

결산검사의견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예산군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수신 : 예산군수

2024회계연도 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4년 3월 27일 ~ 4월 11일(16일간)
- 검사장소 : 예산군청 3층 감사실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 정 순 (예산군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김 영 진 (예산군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조 한 영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박 우 서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이 중 욱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신 원 석 (회계사)

결산검사 의견서

예산군수 귀하

2025년 4월 11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의회의로부터 예산군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1일 까지(16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예산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24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25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으며, 예산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예산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및 계속비 이월액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이 정 순 이 정 순

검사위원 김 영 진 김 영 진

검사위원 조 한 영 조 한 영

검사위원 박 우 서 박 우 서

검사위원 이 종 욱 이 종 욱

검사위원 신 원 석 신 원 석

목 차

I. 결산검사경과	1
II. 결산검사 총괄현황	2
1. 예산군 재정의 개황	2
2. 세입·세출 결산	4
(1) 총괄	4
(2) 일반회계	6
(3) 특별회계	12
(4)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14
3. 기금의 결산	15
4. 재무제표의 결산	17
5. 성과보고서의 결산	19
6. 결산서부속서류의 결산	21
(1) 채권	21
(2) 채무	22
(3) 공유재산	23
(4) 물품	23
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24
IV. 전년도검사결과 조치내용	56

I .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5. 3. 27. ~ 4. 11.(16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이 정 순	결산검사 총괄	
위 원	김 영 진	세입 결산검사	
위 원	조 한 영	세입 결산검사	
위 원	박 우 서	세출 결산검사	
위 원	이 중 욱	세출 결산검사	
위 원	신 원 석	세입 결산검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자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현 황 조 사	3. 27.	업무분장 및 현황조사	
결산검사계획	3. 28.	분야별 검사계획 확정	
통합재정검사	3. 31.	세입·세출 및 기금의 변동내역	
통합재정검사	4. 1.	성과보고서, 성인지 예산 등	
세입세출검사	4. 2.	재무제표상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등	
세입세출검사	4. 3.	세입세출기본회계 및 세출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검토	
세입세출검사	4. 4.	예산부당편성 및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	
세입세출검사	4. 7.	사업예산의 기본구조의 구조화	
세입세출검사	4. 8.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항검토	
세입세출검사	4. 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장조사	
세입세출검사	4. 10.	공유재산, 보조금, 물품, 채무 등	
의 건 서 작 성	4. 11.	결산검사 지적, 권고사항 등 의견서작성	

II.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예산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 세입·세출(기금포함)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세 입(수입)	979,412	1,050,453	1,163,965	1,194,867	1,187,691
	세 출(지출)	764,447	835,434	864,333	901,484	943,732
	결산상잉여금	214,965	215,019	299,632	293,383	243,959
일반회계	세 입	902,569	944,833	1,032,142	1,042,963	1,050,635
	세 출	725,888	772,405	829,893	831,495	867,317
	결산상잉여금	176,681	172,428	202,249	211,468	183,318
특별회계	세 입	29,855	47,590	49,489	66,460	77,659
	세 출	21,443	33,060	32,781	38,697	44,768
	결산상잉여금	8,412	14,530	16,708	27,763	32,891
기 금	세 입	46,988	58,031	82,334	85,444	59,397
	세 출	17,116	29,969	1,659	31,292	31,647
	결산상잉여금	29,872	28,061	80,675	54,152	27,750

- 2024회계연도의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나 기금은 감소하였고,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연도(기금제외)에 11,095,797원이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인구 82,201명 기준)
- 예산군의 현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이나 전년도 이월금이나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예산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채 무 계	-	-	-	-	-	
공 채	-	-	-	-	-	
차 입 금	-	-	-	-	-	
채 무 부 담 행 위	-	-	-	-	-	
지 방 공 기 업 채 무	-	-	-	-	-	
총 합 계	-	-	-	-	-	

○ 2024년 예산군 채무는 0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단위: 백만원)

관 점	재 정 지 표	산 정 방 식	주 의	심 각
채무관리	예산대비채무비율	$\frac{0 \text{ (지방채무잔액)}}{1,126,777 \text{ (총예산)}} = 0\%$	25%초과	40%초과
	채무상환비율	$\frac{0 \text{ (지방채무 상환액)}}{463,141 \text{ (일반재원1)}}$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지방세징수액현황	$\frac{6,032 \text{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6,051 \text{ (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 99.69\%$	50%미만	0%미만
자금관리	금고잔액현황	$\frac{231,530 \text{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278,219 \text{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 83.22\%$	20%미만	10%미만
공기업	공기업 부채비율	1 (부채)	= 0.0003%	400%초과 600%초과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305,604 (순 자산)		

○ 예산군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정위험 판단 지표는 양호하다 할 것임.

1) 일반재원: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기금제외)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C = A-B)
합 계	1,126,777	1,128,294	912,085	216,209
일반회계	1,065,155	1,050,635	867,317	183,318
특별회계	61,622	77,659	44,768	32,891
공기업특별회계	29,647	43,568	24,086	19,482
기타특별회계	31,975	34,091	20,682	13,409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결산상 잉여금 (C)	명 시 이 월 (D)	사 고 이 월 (E)	계 속 비 이 월 (F)	보조금 실제반납금 ²⁾ (G)	순세계 잉여금 (H = C-D-E-F-G)
합 계	-	216,209	52,510	19,873	91,808	13,922	38,096
일반회계	-	183,318	51,667	19,873	81,556	13,729	16,493
특별회계	-	32,891	843	0	10,252	193	21,603
공기업특별회계	-	19,482	578	0	0	0	18,904
기타특별회계	-	13,409	265	0	10,252	193	2,699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보조금실제반납금: 보조금 결산의 집행잔액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1,282억 9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1,267억 7천7백만원 대비 15억 1천8백만원 많게 수납되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9%인 9,120억 8천5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62억 9백만원이고
- 이중 명시이월 525억 9백만원, 사고이월 198억 7천2백만원 및 계속비 이월 918억 7백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39억 2천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억 9천6백만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380억 9천6백만원임이 확인된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1,065,155	1,063,161	1,050,635	892	11,633
결산확인액	1,065,155	1,063,161	1,050,635	892	11,633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651억 5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631억 6천1백만원 중 수납액은 1조 506억 3천5백만원(98.63%)이며, 미수납액은 116억 3천3백만원(1.09%)로 주된 사유는 납세태만 43억 7백만원, 자금압박 23억 1천5백만원 등임.
- 불납결손액은 8억 9천2백만원(0.08%)로서 주된 사유는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3억 6천만원, 평가액부족 3억 1천1백만원 등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실제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50,635	1,050,635	-

○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 수납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24	1,065,155	1,063,161	1,050,635	892	11,634	99.81%	98.82%	0.08%
2023	1,045,878	1,052,282	1,042,963	637	8,682	100.61%	99.11%	0.06%
증감	19,277	10,879	7,672	255	2,952	△0.8%	△0.29%	0.02%

-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92억 7천7백만원(1.81%), 징수결정액은 108억 7천9백만원(1.02%), 수납액은 76억 7천2백만원(0.73%)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5천5백만원(28.58%), 미수납액 29억 5천2백만원(25.36%) 증가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82%으로 전년대비 △0.29%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16억 3천4백만원(1.09%)로서 전년도 86억 8천2백만원(0.82%)에 비해 0.27% 증가함.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합 계	1,065,155	1,063,161	1,050,635	892	11,634
지방세수입	72,490	78,346	72,383	528	5,435
지방세	72,490	78,346	72,383	528	5,435
보통세	71,490	73,536	71,333	2	2,201
주민세	3,500	3,627	3,569	1	57
재산세	14,200	14,961	14,300	0	660
자동차세	12,500	13,518	12,924	1	594
담배소비세	6,750	6,767	6,767		
지방소비세	16,340	15,141	15,141		
지방소득세	18,200	19,522	18,632		890
지난년도수입	1,000	4,811	1,051	526	3,234
세외수입	27,282	36,757	31,702	364	4,691
경상적세외수입	15,173	15,901	15,753		147
재산임대수입	580	661	560		101
사용료수입	4,099	4,515	4,495		20
수수료수입	3,158	3,388	3,387		1
사업수입	466	462	437		25
징수교부금수입	1,562	1,631	1,631		
이자수입	5,308	5,244	5,244		0
임시적세외수입	11,420	19,167	15,093	357	3,716
재산매각수입	70	635	632		3
보조금반환수입	1,900	2,345	2,309		36
기타수입	8,650	12,318	11,049		1,268
지난년도수입	800	3,869	1,103	357	2,40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9	1,690	855	7	827
과징금	60	556	260		296
이행강제금	100	278	117		161
변상금	30	14	8		6
과태료	284	646	349	7	290
환수금	50	30	28		2
부담금	160	163	90		72
범칙금	5	2	2		
지방교부세	310,854	301,174	301,174		
조정교부금등	33,130	33,121	33,121		
보조금	367,694	359,586	359,586		
국고보조금등	250,142	239,348	239,348		
시·도비보조금등	117,552	120,239	120,239		
지방채	780	780	7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2,925	253,396	251,888		1,508
보전수입등	213,844	214,371	212,863		1,508
내부거래	39,081	39,025	39,025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6.89%인 723억 8천3백만원, 세외수입은 3.02%인 317억 2백만원이 수납되었고,
- 그 외 지방교부세는 28.67%인 3,011억 7천4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3.15%인 331억 2천1백만원, 보조금은 34.23%인 3,595억 8천6백만원, 지방채는 0.07%인 7억 8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97%인 2,518억 8천8백만원이 수납됨.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³⁾	보조금 반납액 ⁴⁾	집행잔액
결 산 액	881,308	1,065,155	867,317	157,507	7,539	32,792
결 산 확 인 액	881,308	1,065,155	867,317	157,507	7,539	32,792
차 액	-	-	-	-	-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8,813억 8백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등 증감으로 인해 예산현액은 1조 651억 5천5백만원이고,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42%에 해당하는 8,673억 1천7백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575억 7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516억 6천7백만원, 사고이월액은 198억 7천3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859억 6천7백만원(자금없는 이월 44억 11백만원 포함)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함.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7%에 해당하는 327억 9천2백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 후 지출 잔액임.
- 참고로,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5%인 5억 8천5백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축산과 구제역예방백식지원등 14건이며 세출예산 변경액은 예산현액의 0.08%인 9억 2천만원으로 문화관광과 청소년음악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등 40건입니다.

3)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자금없는이월액(4,411백만원)

4)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원인별현황에 작성한 보조금 반납금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67,317	867,317	-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3 지출액	2024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 계	831,495	1,065,155	867,317	81.43	35,822	104.31
일 반 공 공 행 정	50,197	65,574	50,095	76.39	△102	99.80
공 공 질 서 및 안 전	40,326	60,314	43,823	72.66	3,497	108.67
교 육	3,935	5,357	5,141	95.97	1,206	130.65
문 화 및 관 광	73,727	110,365	69,823	63.27	△3,904	94.70
환 경	102,448	113,709	97,717	85.94	△4,731	95.38
사 회 복 지	174,321	196,196	186,668	95.14	12,347	107.08
보 건	13,204	18,911	17,119	90.52	3,915	129.65
농 립 해 양 수 산	176,550	243,889	180,521	74.02	3,971	102.2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0,166	37,352	29,978	80.26	9,812	148.66
교 통 및 물 류	41,660	51,187	44,192	86.33	2,532	106.08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8,933	66,571	50,848	76.38	1,915	103.91
예 비 비	-	1,251				
기 타	86,027	94,479	91,392	96.73	5,365	106.24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1,866억 6천8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805억 2천1백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부문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9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8.66%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 수납액
합 계	61,622	78,023	77,659	0	364
기 타 특 별 회 계	31,975	34,299	34,091	0	206
의 료 급 여 기 금	1,042	1,090	1,050	0	4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 활 안 정 기 금	15	23	23	0	0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1,424	1,277	1,276	0	1
주 차 장 사 업	12,491	13,025	12,867	0	15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 지 보 상	366	366	366	0	0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706	1,730	1,722	0	8
폐 기 물 처 리 시 설	3,528	3,559	3,559	0	0
공 공 급 식 지 원 센 터	10,940	11,763	11,763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63	1,465	1,465	0	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9,647	43,726	43,568	0	158
상 수 도 사 업	12,858	23,965	23,839	0	126
하 수 도 사 업	16,789	19,760	19,729	0	32
결산확인액			77,659		
차액			0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16억 2천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80억 2천3백만원 중 수납액은 776억 5천9백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26.03%로 160억 3천7백만원 많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의 99.53%이고, 미수납액 3억 6천4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47%임.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7,659	77,659	-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61,622	44,768	11,095	193	5,567
기 타 특 별 회 계	31,975	20,681	10,517	193	585
의 료 급 여 기 금	1,042	992	0	0	50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자 생 활 안 정 기 금	15	1	0	0	14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1,424	1,188	0	0	236
주 차 장 사 업	12,491	5,364	7,069	0	58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366	350	0	0	16
산 업 단 지 조 성 관 리 사 업	706	604	-	0	102
폐 기 물 처 리 시 설	3,528	81	3,447	0	0
공 공 급 식 지 원 센 터	10,940	10,832	0	0	108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1,463	1,270	0	193	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9,647	24,087	578	0	4,982
상 수 도 사 업	12,858	12,061	147	0	650
하 수 도 사 업	16,789	12,026	431	0	4,332
결산확인액		44,768			
차액		-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16억 2천2백만원이고, 세출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65%에 해당하는 447억 6천8백만원이었으며,
- 이월액 중 명시이월 8억 4천2백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102억 5천2백만원이 발생한바 이는 공사 지연 등에 기인하였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4,768	44,768	-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단위: 백만원)

구분	건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 잔액
					합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82	400,143	285,779	232,281	168,602 (4,411)	52,510	19,873	96,219 (4,411)	8,259
일반회계	276	376,846	269,227	211,202	157,507 (4,411)	51,667	19,873	85,967 (4,411)	8,137
기타특별회계	4	15,505	9,261	4,988	10,517	265	0	10,252	0
주차장 특별회계	2	11,977	9,141	4,907	7,070	265	0	6,805	0
폐기물 처리시설	2	3,528	120	81	3,447	0	0	3,447	0
공기업특별회계	2	7,792	7,291	7,091	578	578	0	0	122
상수도 특별회계	1	6,197	5,966	5,966	147	147	0	0	83
하수도 특별회계	1	1,595	1,325	1,125	431	431	0	0	39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금없는 이월액

3. 기금의 결산

본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조정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정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54,152	△26,402	5,245	31,647	27,7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811	△29,447	872	30,320	2,36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308	958	958	0	14,265
포괄기금	5,477	△13	690	703	5,464
재난관리기금	2,160	1,150	1,556	406	3,311
주민지원기금	497	198	271	73	695
옥외광고발전기금	340	380	505	125	720
예산군고향사랑기금	325	323	323	0	648
식품진흥기금	235	49	69	20	284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조성·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평균 증가율 ⁵⁾
전년도말 조정액	42,288	29,872	28,061	80,676	54,152	6.4%
당해연도 조성액	4,699	28,159	54,273	4,768	5,245	2.8%
당해연도 사용액	17,116	29,969	1,658	31,292	31,647	16.6%
당해연도 말조정액	29,872	28,061	80,676	54,152	27,751	△1.8%

5) 연평균 증가율(e호주 자동산출) : 전년대비 증가율을 계산하여, 5년 평균 증가율로 환산

- 2024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541억 5천2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2억 4천5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316억 4천7백만원을 공제한 277억 5천1백만원이다.

- 검사결과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7억 5천1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264억 1백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4. 재무제표의 결산

2024회계연도 예산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전년대비증감	
			금액	비율
자 산	3,932,355	4,018,588	86,233	102.2%
Ⅰ. 유 동 자 산	302,818	244,945	△57,873	80.9%
Ⅱ. 투 자 자 산	7,000	7,457	457	106.5%
Ⅲ. 일반유형자산	216,745	220,560	3,815	101.7%
Ⅳ. 주민편의시설	676,718	736,760	60,042	108.8%
Ⅴ. 사회기반시설	2,725,935	2,805,961	80,026	102.9%
Ⅵ. 기타비유동자산	3,139	2,904	△235	92.5%
부 채	44,655	49,281	4,626	110.3%
Ⅰ. 유 동 부 채	11,685	15,958	4,273	136.3%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32,970	33,323	353	101.1%
순 자 산	3,887,700	3,969,307	81,607	102.1%
Ⅰ. 고정순자산	3,596,924	3,740,859	143,935	104.0%
Ⅱ. 특정순자산	54,757	27,868	△26,889	50.9%
Ⅲ. 일반순자산	236,019	200,580	△35,439	84.9%

- 2024회계연도 말 예산군의 자산은 4조 185억원으로, 전년도 3조 9,323억원보다 862억원(102.2%)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주민편의시설 등 유형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 반면, 2024회계연도 말 예산군의 부채는 492억원으로 전년도 446억원보다 46억원(10.31%)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보조금실제반납금 등)가 42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전 년 대 비 증 감	
			금 액	증감률
I. 사업순원가 (가-나)	189,411	199,548	10,137	105.3
가. 사업총원가	501,798	578,831	77,033	115.4
나. 사업수익	312,388	379,283	66,895	121.4
II. 관리운영비	97,480	105,582	8,102	108.3
III. 비배분비용	52,598	36,841	△15,757	70.0
IV. 비배분수익	28,376	21,146	△7,230	74.52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311,112	320,825	9,713	103.1
VI. 일반수익	499,427	424,721	△74,706	85.0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188,315)	(103,896)	84,419	54.8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예산군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5,788억 3천 1백만원에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792억 8천3백만원을 차감한 1,995억 4천8백만원이다.
- 또한 2024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 1,055억 8천2백만원은 인건비 915억 2백만원과 경비 140억 4천3백만원, 민간등이전비용 3천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368억 4천1백만원은 기타비용 368억 4천만원과 운영비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141억 2천 7백만원과 기타수익 70억 1천9백만원으로 구성되고, 일반수익은 자체조달수익 793억 8천5백만원과 정부간이전수익 3,448억 6천2백만원과 기타수익 4억 7천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4회계연도 예산군의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1,038억 9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44억 1천9백만원 증가하였다.

5. 성과보고서의 결산

- 예산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4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예산군은 본 회계연도의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3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예산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235개의 사업 중 달성 180개(76.59%)로 전년 달성률(82.17%)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지표들이 있어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

부서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미달성	달성률(% (B/A)
계	24	94	235	180	55	76.59%
기 획 실	1	4	8	7	1	87.5%
자 치 행 정 과	1	4	10	8	2	80.00%
안 전 관 리 과	1	4	11	9	2	81.8%
주 민 복 지 과	1	5	11	11	0	100%
가 족 지 원 과	1	4	10	8	2	80.00%
민 원 봉 사 과	1	6	17	17	0	100%
문 화 관 광 과	1	4	14	8	6	57.14%
세 무 과	1	1	1	1	0	100%
회 계 과	1	2	2	2	0	100%
교 육 체 육 과	1	4	11	11	0	100%
경 제 과	1	7	16	14	2	87.5%
미 래 성 장 과	1	5	6	1	5	16.66%
환 경 과	1	7	16	8	8	50.00%
농 정 유 통 과	1	6	13	12	1	92.30%
축 산 과	1	2	5	4	1	80.00%
산 림 녹 지 과	1	2	4	4	0	100.00%
건 설 교 통 과	1	7	13	7	6	53.84%
건 축 과	1	6	13	8	5	61.53%
수 도 과	1	3	5	4	1	80.00%
의 회 사 무 과	1	1	3	1	2	33.33%
보 건 소	1	4	19	16	3	84.21%
농업기술센터	1	4	17	12	5	70.58%
공공시설사업소	1	1	6	5	1	83.33%
관광시설사업소	1	1	4	2	2	50.00%

6. 결산서 부속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6,171	532	864	5,839
일	반 회 계	3,552	6	238	3,321
기	타 특 별 회 계	475	6	66	414
	농공지구조성사업	250	6	56	2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225	-	10	214
기	금	2,144	520	560	2,104
	포 괄 기 금	2,144	520	560	2,104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억 3천9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 무

채 무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	-	-	-
일 반 회 계	-	-	-	-
기 타 특 별 회 계	-	-	-	-
의 료 급 여 기 금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	-	-	-
농공지구조성사업	-	-	-	-
주 차 장 사 업	-	-	-	-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	-	-	-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공공급식지원센터	-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	-	-
기 금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	-	-
포 괄 기 금	-	-	-	-
재 난 관 리 기 금	-	-	-	-
주 민 지 원 기 금	-	-	-	-
옥외광고발전기금	-	-	-	-
예산군고향사랑기금	-	-	-	-
식 품 진 흥 기 금	-	-	-	-

○ 검사결과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다.

(3) 공유재산

본 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952,312	215,162	15,589	2,151,885	
행정 재산	소 계	1,621,829	137,407	15,249	1,743,989
	공 용 재 산	427,926	58,741	718	485,949
	공 공 용 재 산	1,024,564	72,940	14,278	1,083,226
	기 업 용 재 산	146,022	5,474	0	151,495
	보 존 용 재 산	23,317	252	252	23,316
일반재산	34,345	138	340	34,142	
건설중인 재산	296,138	77,617	0	373,754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995억 7천3백만원이 증가한 2조 1,518억 8천5백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토지 330필지 183억 9천만원, 건물 31건 618억 6천7백만원 등이며, 감소내용은 대지 121건 △43억 6천1백만원 등이다.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보유액
		취 득	처 분	
수 량	1,463	77	18	1,522
금 액	13,139	1,507	572	14,073

○ 검사결과, 물품은 미니버스 등 14종의 물품을 취득하였으며, 쓰레기수거용 트럭 물품등을 처분하여 전년대비 934백만원이 증가하였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철저

□ 현 황

○ 2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A-B-C)	
			금액	비율(%)			
총 계	99,772	115,103	104,085	100	892	10,125	
소 계	72,490	78,346	72,383	100	528	5,435	
지방세	주민세	3,500	3,627	3,569	4.9	1	57
	재산세	14,200	14,961	14,300	19.8	1	660
	자동차세	12,500	13,518	12,924	17.9	-	594
	담배소비세	6,750	6,767	6,767	9.3	-	-
	지방소비세	16,340	15,140	15,140	20.9	-	-
	지방소득세	18,200	19,522	18,632	25.7	-	890
	지난년도수입	1,000	4,811	1,051	1.5	526	3,234
소 계	27,282	36,757	31,702	100	364	4,690	
세외수입	경상외수입	15,173	15,901	15,754	49.7		147
	임시외수입	11,420	19,166	15,093	47.6	357	3,716
	지방행정제재부과	689	1,690	855	2.7	7	827

○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A-B-C)
				비율		
합 계	285,013	334,014	305,611	100.0	2,785	25,617
지방세	210,807	233,494	217,853	71.2	2,066	13,575
세외수입	74,206	100,520	87,758	28.7	719	12,042
2022년도						
소 계	93,144	107,792	99,716	100.0	1,256	6,820
지방세	70,417	77,313	72,768	73.0	1,046	3,499
세외수입	22,727	30,479	26,948	27.0	210	3,321
2023년도						
소 계	92,097	111,119	101,810	100.0	637	8,672
지방세	67,900	77,835	72,702	71.4	492	4,641
세외수입	24,197	33,284	29,108	28.6	145	4,031
2024년도						
소 계	99,772	115,103	104,085	100	892	10,125
지방세	72,490	78,346	72,383	69.5	528	5,435
세외수입	27,282	36,757	31,702	30.5	364	4,690

○ 위 현황과 같이 최근 3년간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25,617백만원(지방세 13,575백만원, 세외수입 12,042백만원)으로

- 2022년도 미수납액은 6,820백만원(지방세 3,499백만원, 세외수입 3,321백만원)이고,
- 2023년도 미수납액은 8,672 ㄴ (지방세 4,641 ㄴ , 세외수입 4,031 ㄴ)이며
- 2024년도 미수납액은 10,125 ㄴ (지방세 5,435 ㄴ , 세외수입 4,690 ㄴ)임

□ 문제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2022년도 6,820백만원 → 2023년도 8,672백만원 → 2024년도 10,125백만원
- 2024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하였고, 2023년은 2022년 대비 12.7 %가 증가하였음
- 또한 매년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발생증가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정확히 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시에는 납기내 전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시 조세 채권 등을 우선 확보하여 징수토록 하는 등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발생 최소화

□ 22~24년도 지방세 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징수 결정액	환급액	비율	징수 결정액	환급액	비율	징수 결정액	환급액	비율
합 계	73,303	1,169	1.60	73,301	1,167	1.59	72,373	2,314	3.20
주 민 세	3,336	2	0.07	3,429	2	0.07	3,559	9	0.26
자 동 차 세	12,338	92	0.75	12,346	98	0.80	12,924	113	0.87
재 산 세	14,711	103	0.70	14,110	14	0.10	14,300	157	1.10
담 배 소 비 세	6,877	-	-	6,877	-	-	6,767	8	0.12
지 방 소 비 세	14,543	-	-	15,656	-	-	15,140	18	0.12
지 방 소 득 세	20,259	430	2.12	19,782	453	2.29	18,632	1,983	10.64
지 난 년 도 수 입	1,239	542	43.76	1,101	600	54.40	1,051	26	2.45

※ 22년과 23년은 당해연도에 환급이 되는 지난연도 환급금은 지난연도 수입금에서 환급금을 지급

※ 24년은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당해연도에 환급이 되는 지난연도 환급금은 당해연도 수입금에서 환급금을 지급함.

□ 문 제 점

- 최근 3년간(22~24) 지방세 환급현황을 보면, 22년도 환급액은 1,169백만원이고, 23년도 환급액은 1,167백만원이며, 24년도 환급액은 2,314백만원으로 증가되었음.
- 지방세 중 자동차세 환급액은 22년도 92백만원에서 23년도 98백만원 24년도 113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 재산세 환급액은 22년도 103백만원에서, 23년도 14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4년도에는 157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22년도 430백만원, 23년도 453백만원, 24년도는 1,98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지방소득세 환급액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경정결정 등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평소 세무관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해 세무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함은 물론,
- 지방세 부과시 지방세 관계법령등에 의거 정확히 산정부과함으로써 지방세 과오납 발생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

3.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 이자수입증대 방안강구

□ 현 황

○ 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현황

<24.12.31.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평잔	이 자 수 익				
		계	정 기 예 금		공 금 예 금	
			이자율		이자율	
합계	909,756	909,756	870,275	2.74%	39,481	0.4%
일반회계	196,869	196,869	176,557	2.76%	20,312	0.4%
기타특별회계	661,103	661,103	652,261	2.68%	8,842	0.4%
소계	661,103	661,103	652,261	2.68%	8,842	0.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	38	-	-	38	0.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 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	15	-	-	15	0.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1	121	-	-	121	0.4%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945	5,945	2,535	2.67%	3,410	0.4%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8	78	-	-	78	0.4%
산업단지조성관리사 업 특별회계	801	801	-	-	801	0.4%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331	2,331	-	-	2,331	0.4%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650,698	650,698	649,726	2.70%	972	0.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76	1,076	-	-	1,076	0.4%
공기업특별회계	14,941	14,941	6,835	2.64%	8,106	0.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841	7,841	3,420	2.74%	4,421	0.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100	7,100	3,415	2.54%	3,685	0.4%

(단위:백만원)

구 분		평잔	이 자 수 익				
			계	정 기 예 금		공 금 예 금	
				이자율		이자율	
기 금 회 계	소계	36,843	36,843	34,622	2.91%	2,221	0.4%
	포 괄 기 금	396	396	390	2.93%	6	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 정)	14,663	14,663	14,625	2.82%	38	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 정 안 정 화 계 정)	16,804	16,804	16,733	2.81%	71	0.4%
	식 품 진 흥 기 금	273	273	172	2.91%	101	0.4%
	주 민 지 원 기 금	587	587	300	3.03%	287	0.4%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330	330	-	-	330	0.4%
	재 난 관 리 기 금	3,272	3,272	2,192	3.04%	1,080	0.4%
	예산군고향사랑기금	518	518	210	2.88%	308	0.4%

- 2024년도에 일반회계, 11개 특별회계 및 8개 기금회계를 운영하였으며,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 운용에 따른 자금은 군금고에 예치,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 문 제 점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자금운용에 있어
 - 일반회계 공금예금 이자율은 0.4%이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2.76%이며
 - 11개 특별회계의 경우 공금예금은 이자율 0.4%로 운용하였고, 정기예금은 최소 2.54%부터 최대 2.74%의 이자율로 운용하였음
 - 8개 기금회계의 경우 공금예금은 0.4%로 운용하였고, 정기예금은 최소 2.81%부터 최대 3.04%의 이자율로 운용하였는바 공금예금의 경우 이자율이 0.4%로 동일하나 정기예금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 이자율이 상이하여 최대한 고율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의 예치결과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재원이므로 여유자금은 가급적 금리가 높은 이자율로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시키기 바람.

4.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방안 마련 추진

□ 현 황

○ 22~24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회계별	예산현액 (A)	계(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율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계	1,194,055	307	166,929	118	55,448	88	22,493	101	88,988 (1,128)	13.98%
	일 반	1,041,065	298	160,199	114	52,017	86	22,245	98	85,937 (1,128)	15.39%
	기 타	152,990	9	6,730	4	3,431	2	248	3	3,051	4.40%
2023	계	1,184,280	357	197,072	144	70,919	112	27,250	101	98,903	16.64%
	일 반	1,045,877	343	184,756	141	69,159	105	26,020	97	89,577	17.67%
	기 타	138,403	14	12,316	3	1,760	7	1,230	4	9,326	8.90%
2024	계	1,185,152	305	168,602	119	52,510	77	19,873	109	96,219 (4,411)	14.22%
	일 반	1,066,064	297	157,507	114	51,667	77	19,873	106	85,967 (4,411)	14.77%
	기 타	119,088	8	11,095	5	843			3	10,252	9.34%

※() 자금없는 이월액임

○ 22~24회계연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 ▶ 2022년도 총 307건 166,929백만원(일반 298건, 160,199백만원, 기타 9건 6,730백만원)으로
 - 명시이월 : 118건 55,448 〃 (일반 114건, 52,017 〃 , 기타 4건 3,431 〃)
 - 사고이월 : 88건 22,493 〃 (일반 86건, 22,245 〃 , 기타 2건 248 〃)
 - 계속비이월 : 101건, 88,988 〃 (일반 98건, 85,937 〃 , 기타 3건 305 〃)
- ▶ 2023년도 총 357건 197,072 〃 (일반 343건, 184,756 〃 , 기타 14건 12,316 〃)으로
 - 명시이월 : 144건 70,919 〃 (일반 141건 69,159 〃 , 기타 3건 1,760 〃)
 - 사고이월 : 112건 27,250 〃 (일반 105건, 26,020 〃 , 기타 7건 1,230 〃)
 - 계속비이월 : 101건 98,903 〃 (일반 97건 89,577 〃 , 기타 4건 9,326 〃)

- ▶ 2024년도 이월액은 총 302건 168,602백만원(일반 297건 157,507백만원, 기타 6건 11,769백만원)으로
 - 명시이월 : 119건 52,510 ㄴ (일반 114건 51,667 ㄴ , 기타 5건 843 ㄴ)
 - 사고이월 : 77건 19,873 ㄴ (일반 77건 19,873 ㄴ)
 - 계속비이월 : 109건 96,219 ㄴ (일반 106건 85,967 ㄴ , 기타 3건 10,252 ㄴ)
- 22~24회계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 2022년도 예산현액(1,194,055백만원)대비 이월액은 166,929백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 2023년도는 예산현액(1,184,280백만원) 대비 이월액은 197,072백만원으로 16.64%를 점유하고 있으며,
 - 2024년도의 경우 예산현액(1,185,152백만원) 대비 이월액은 168,602백만원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이월에 있어
 - 명시이월의 경우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계속비(지방재정법 제42조)의 경우 공사나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 문 제 점

-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이나,

-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으로 한정하여 이월제도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 위 현황과 같이

- 2022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1,194,055백만원) 대비 이월액은 166,929백만원으로 이월율은 13.98%이고
- 2023년도 예산현액(1,184,280백만원) 대비 이월액은 197,072백만원으로 이월율은 16.64%이며
- 2024년도는 예산현액 1,185,152백만원 대비 이월액은 168,602백만원으로 14.22%를 점하는 등 최근 3년간 (22~ 24회계년도)이월율이 각 회계연도 예산현액의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 그리고, 2024년도 예산군 지방재정 신속집행계획에 의하면 2024년도의 경우 민생경제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2024년도 상반기까지 신속집행 대상액(550,600백만원)중 목표액(298,900백만원)을 정하여 선구매, 선지급, 수의계약 및 선금지급확대 등을 적극활용, 집행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신속 집행을 추진한바 있음에도 이월액 비율이 높은 편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철저한 타당성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등은 년초에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람.

5. 공무 국외연수비 안정적 예산 확보

□ 현 황

○ 24년 예산변경(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예산액	요구액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감	증	
자 치 행정과 (총무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	공무원 복지향상	직원후생복지 관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4)	2,001,825	100,000		공무국외 출장 지원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	공무원 경쟁력강화	공무국외 출장지원	국제화 여비 (202-04)	301,000		100,000	공무국외 출장 지원

□ 문 제 점

- 공무원 국외연수비는 매년 연수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한 후 년초 연간 국외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대상자 및 대상국가(도시)선정, 선진외국의 우수사례와 예산군에서 접목시킬 사항 등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통해 연수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 24년의 경우 공무국외연수비로 본예산에 105백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 (24.3.20.)에 196백만원을 증액하였다가, 이후 공무국외연수비 부족액 100백만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예산전용(24.5.22)을 통해 확보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무원 국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의 일정금액을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 년초에 공무원 공무국외연수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에 연수 대상국가(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연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성과지표 예산관리 철저

□ 현 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 성과목표관리체계 도입의 주요목적은 성과정보를 예산배분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여부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업무 수행의 책임성 제고에 있음
- 이에 예산군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성과 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24년도 성과지표는 전체 235개(100%) 지표중 초과달성 17개(7.24%), 달성 163개(69.36%) 미달성 55개(23.40%)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성과목표 총괄

○ 22~24년도 성과목표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성과목표						결산액	비교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68	277	711	61	454	196	2,579,224	
2022	22	93	246	17	130	99	843,427	
2023	22	90	230	27	161	42	847,797	
2024	24	94	235	17	163	55	888,000	

※ 초과달성(130% 이상달성), 달성(100~130% 미만달성), 미달성(100%미만달성)

○ 24년도 성과목표 세부내역(부서별)

(단위 : 건, %)

연번	부서명	전략목표명	성과목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합 계		24	94	235	17	163	55	76.60	
1	기 획 실	○ 미래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 발굴로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	1	4	8	2	5	1	87.50	
2	자 치 행 정 과	○ 일하기 좋은 조직, 일하고 싶은 일터 조성	1	4	10	1	7	2	80.00	
3	안 전 관 리 과	○ 적극적인 재난관리로 재해 및 재난 피해 최소화	1	4	11	0	9	2	81.80	
4	주 민 복 지 과	○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감동복지 구현	1	5	11	0	11	0	100.00	
5	가 족 지 원 과	○ 저출산 고령화, 돌봄요구 증가 등에 따른 세대별 맞춤 복지서비스 구현	1	4	10	0	8	2	80.00	
6	민 원 봉 사 과	○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및 현장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1	6	17	0	17	0	100.00	
7	문 화 관 광 과	○ 변화하는 관광 및 예술 트렌드 분석을 통한 충남 관광의 중심지로의 도약	1	4	14	2	6	6	57.14	
8	세 무 과	○ 군민이 만족하는 든든한 재정관리 추진	1	1	1	0	1	0	100.00	
9	회 계 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예산 집행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1	2	2	0	2	0	100.00	
10	교 육 체 육 과	○ 다양한 학교교육과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운영 등	1	4	11	1	10	0	100.00	
11	경 제 과	○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성장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1	7	16	1	13	2	87.50	
12	미 래 성 장 과	○ 미래지향적인 공간계획 수립, 미래성장전략사업 발굴 및추진	1	5	6	0	1	5	16.67	
13	환 경 과	○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생태도시 조성	1	7	16	0	8	8	50.00	
14	농 정 유 통 과	○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활동 보장 및 농업인 복지향상으로 농촌복지 구현	1	6	13	0	12	1	92.31	

(단위 : 건, %)

연번	부서명	전략목표명	성과목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15	축 산 과	○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전망 확충	1	2	5	1	3	1	80.00	
16	산 림 녹 지 과	○ 숲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건강한 산림육성·지역주민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으로 산림복지서비스확대	1	2	4	1	3	0	100.00	
17	건 설 교 통 과	○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최상의 정주 공간을 조성	1	7	13	1	6	6	53.85	
18	건 축 과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	1	6	13	0	8	5	61.54	
19	수 도 과	○ 정수장, 상하수도 확충사업 추진으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	1	3	5	0	4	1	80.00	
20	의 회 사 무 과	○ 원활한 의회기능 수행 및 민의를 대변, 건전한 비판과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건전한 의회상을 정립	1	1	3	0	1	2	33.33	
21	보 건 소	○ 양질의 의료 및 건강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 지킴이 위상 제고	1	4	19	4	12	3	84.21	
22	농 업 기술 센터	○ 종합기술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농촌을 구현	1	4	17	0	12	5	70.59	
23	공공시설사업소	○ 문화 예술 프로그램 확대로 군민의 문화 예술 참여 기회 확대	1	1	6	2	3	1	83.33	
24	관광시설사업소	○ 관광시설을 통한 지역문화 창조 및 창달을 구현	1	1	4	1	1	2	50.00	

□ 문제점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불일치

-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총괄표와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주요성과 및 정책사업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보고서에 정책사업목표 1개와 지표수 2개가 증가되어 있음

(단위 : 개)

구 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개수	지표수		개수	지표수	
계	24	93	233	24	94	235	
행 정 복 지 국	10	38	94	10	38	95	
산 업 건 설 국	9	44	90	9	45	91	
의 회 사 무 과	1	1	3	1	1	3	
직 속 기 관 , 사 업 소	4	10	46	4	10	46	

-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17-1호)의 성과보고서 작성 기본방향은

- ▶ 당해연도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성과 정보의 임의변경 및 누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미흡

- 성과계획서 작성시 성과지표의 목표치설정은 과거실적 추계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비교,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개선노력 등을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은 물론 목표치가 도전적, 합리적 수준임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작성해야 함
- 성과지표 초과달성 및 미달성 현황중 초과달성 17건 중 2년 연속 초과 달성 건수는 8건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을 익년도 목표치에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계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성과달성률 70% 미만인 7개 부서는 연초 계획한 성과목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평가관리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 도입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성과목표관리제도의 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는 성과관리제도의 핵심내용으로 성과보고서상의 분석결과 및 개선사항 등이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과정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하려는 성과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측정이 곤란한 사업은 성과목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해 보임

7. 공유재산 실태점검 및 활용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재산별 수량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년도말	증	감	당해연도말
계	155,998	599	80,576	76,021
토 지	19,912	330	549	19,693
건 물	518	31	4	545
공 작 물	55,406	142	-	55,548
기 계 기 구	3	-	-	3
선 박	1	-	-	1
무 체 재 산	1	95	-	96
유 가 증 권	80,000	-	80,000	-
용 익 물 건	2	1	1	2
회 원 권	27	-	-	27
건 설 중 인 자 산	128	-	22	106

○ 재산별 금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증	감	당해연도말
계	1,952,311,635,862	215,162,385,527	15,589,301,476	2,151,884,719,913
토 지	759,976,560,147	18,390,934,156	14,431,180,654	763,936,313,649
건 물	384,504,524,824	61,867,332,122	728,120,822	445,643,736,124
공 작 물	503,143,111,001	57,818,192,230	-	560,324,303,231
기 계 기 구	7,369,353,500	-	-	7,369,353,500
선 박	33,505,200	-	-	33,505,200
무 체 재 산	3,543,000	36,194,620	-	39,737,620
유 가 증 권	400,000,000	-	400,000,000	-
용 익 물 건	70,000,000	70,000,000	30,000,000	110,000,000
회 원 권	673,371,000	-	-	673,371,000
건 설 중 인 자 산	296,137,667,190	77,616,732,399	-	373,754,399,589

- 24년도 공유재산 합계액은 전년도에 1,952,312백만원에서 2,151,885백만원으로 199,57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수량은 22건이 감소한 반면 금액은 77,616백만원이 증가되어 있음
- 생산적인 활용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의 매각, 활용등을 통한 재정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현재 예산군의 자산관리는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차세대이호조시스템을 통한 자산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자산관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유휴 공유재산 및 무단점유 누락재산에 대한 점검과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정수입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활용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권고함.
-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동내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변동내역을 발생 즉시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총괄 담당자는 변동내역이 정확하게 차세대이호조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8.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 현 황

○ 22년 ~ 24년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액	세출액	이월금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2022	계	1,080,543	862,674	165,794	10,607	42,530
	일 반	1,032,142	829,893	159,064	10,595	32,564
	공 기 업	29,770	19,247	3,632		7,979
	기 타	18,631	13,534	3,098	12	1,987
2023	계	1,109,442	870,192	196,131	9,624	33,477
	일 반	1,042,983	831,495	183,847	8,801	18,821
	공 기 업	39,756	22,395	5,034		12,327
	기 타	26,703	16,302	7,250	823	2,329
2024	계	1,128,295	912,088	164,190	14,005	38,013
	일 반	1,050,635	867,317	153,095	13,812	16,412
	공 기 업	43,568	24,088	578		18,902
	기 타	34,092	20,683	10,517	193	2,699

※ 22년 순세계잉여금 중 20,500백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전출금 포함

※ 24년 공기업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 상수도특별회계 : 11,629 백만원(2023년 9,512 백만원)
- 하수도특별회계 : 7,273 백만원(2023년 2,815 백만원)

□ 문 제 점

-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 및 초과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 발생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회계연도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는 재원으로

- 24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전년대비 4,536백만원(13.55%)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 대비 3.36%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4.17%인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대비 2,409백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액 대비 1.56%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575백만원이 증가(2023년은 전년대비 4,348백만원 증가)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43.39%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70백만원 증가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7.92%임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2.77%에 불과하나, 일반회계보다도 2,490백만원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회계간 재정운용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만큼 사전에 세입·세출 추계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경우 또는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간 사전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기금이전, 관련사업 전환등)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계속성 유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9. 세출예산 자금 없는 이월액 과다발생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22	1,041,065	160,199	52,017	22,245	85,937 (1,128)
2023	1,045,877	184,756	69,159	26,020	89,577
2024	1,066,064	157,507	51,667	19,873	85,967 (4,411)

※ ()는 자금없는 이월액 임

□ 24년 자금없는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A)	자금없는 이월액(B)	비율 (B/A)
계	4건	12,090	3,721	3,089	9,001	4,411	49
농 정 유통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삽교)	8,362	2,428	1,844	6,518	3,120	48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광사)	1,289	692	675	614	252	41
	" (대흥)	1,290	78	61	1,229	638	52
	" (응봉)	1,149	523	509	640	401	63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해당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으나

- 2024년 자금없는 이월사업은 4건에 4,411백만원으로 전액 국비 임
- 국내 경기침체로 정부의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지방세수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 지방교부세 감액은 정부가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에 떠 넘긴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 할 경우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의 세수 결함등으로 국고보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미교부된 경우 자금없는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바 소관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회계연도내에 자금이 교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불용액) 발생

□ 현 황

○ 24년도 불용액 발생현황(단위사업 1천만원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고
합계	7개부서 14건	1,445,574 국)682,250 도)236,929 군)526,395	0	1,445,574	
주 민 복 지 과	최 중증발달장애인 그룹형 개별 일대일 활동지원	106,857 국)74,800 도) 9,615 군)22,442	0	106,85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10,000 국)8,000 도)1,000 군)1,000	0	10,000	
	충남 예산지역 자활센터 신축	500,000(국)	0	500,000	
가 족 지 원 과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57,550(국)	0	57,55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320 국)19,660 도)5,898 군)13,762	0	39,320	
축 산 과	낙시환경개선사업	31,500(도)	0	31,500	
	동물복지컨설팅사업	14,000 국)8,000 도)1,800 군)4,200	0	14,000	
농 정 유 통 과	농작업현장친환경화장실설치	13,500 도)3,600 군)9,900	0	13,500	
	주요농산물가격안정제사업	166,667 도)50,000 군)116,667	0	166,667	
	원예특작지역맞춤형사업	80,000(도)	0	80,000	
산 림 녹 지 과	목재펠릿보일러보급	14,560 국)6,240 도)2,496 군)5,824	0	14,560	
	친환경목재생산	16,000 국)8,000 도)2,400 군)5,600	0	16,000	
건 축 과	신레원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33,550(군)	0	233,550	
수 도 과	유수율통합관리지원사업(전환사업)	162,070 도)48,620 군)113,450	0	162,070	

□ 문제점

- 24년도 단위사업 1천만원이상 사업 집행 결과 전액 미집행(불용액) 사업은 7개부서 14건 1,445,574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총 14건중 국비보조사업 8건(57%), 도비보조사업 5건(36%)이 발생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하고도 전액 미집행 하였다는 것은 재정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서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토록 하고,
- 여건 변동으로 인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할 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거나, 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 등은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하여 가용 재원을 현안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1. 대규모 주요 사업 집행률 제고

□ 현 황

- 30억원 이상 대규모 주요 사업중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은 12개 사업, 2천 498억3천1백만원으로 2024년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651억5천5백만원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집행률은 34.1%임.

<집행률 70%미만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도사업비	원인행위	지출액	지출율(총사업비)
계	12개 사업	249,831	62,531	36,252	32,315	22,556	34.1
기획실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 (1 차)	7,600	2,995	1,000	2,161	1,909	64.5
안전관리과	예산천지구 풍수해 위험생태권 종합 정비 사업	29,990	4,731	7,341	7,800	7,341	40.3
안전관리과	재해 위험 지역 정비 (만 사 지 구)	18,132	1,447	1,041	1,041	1,041	13.7
문화관광과	덕산온천 휴양 마을 조성 사업	28,500	2,096	2,756	809	458	8.9
문화관광과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 사업	36,032	14,832	3,805	3,693	3,693	51.4
문화관광과	추사서예 창의 마을	17,077	5,060	2,602	2,602	1,741	39.8
경제과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전 환 사 업)	6,146	2,717	2,000	0	0	0
건설교통과	내포문화권 및 기타 도로 사업	12,034	1,600	3,020	3,019	3,019	38.4
건설교통과	군도 확·포장사업(자체)	13,612	1,291	728	697	693	14.6
건설교통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6,795	5,590	4,500	1,075	738	23.6
건설교통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자 체)	6,092	1,210	400	579	575	29.3
수도과	덕산지구 농어촌상수도 확충 사업 (2 단 계)	47,821	18,962	7,059	8,839	1,348	42.5

※ 시설비 30억원 이상 사업

□ 문제점

- 30억원이상 대규모 주요 사업중 집행률 70% 미만 집행된 사업은 12개 사업, 2498억31백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34.1%에 불과한 실정임.
- 집행 실적이 미흡한 주요 사유는 토지보상,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대규모 사업의 집행률 저조가 매년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등 예산집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결과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대규모 사업은 관광, 주민편익, 기반시설 등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를 주는 사업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공모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추진시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성과분석과 토지보상, 행정절차 등 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특히,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본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집행에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됨.

12. 물품관리 철저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의거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회계년도 말 물품은 총 1,522개, 140억7천3백만원으로 전 회계연도 1,463개, 131억3천9백만원보다 수량은 59개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9억3천4백만원 증가하였음

< 물품 증감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정수물품)	전회계연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소계	구매	관리전환. 잉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잉여.기타	
수량	1,463	77	60	17	18	1	17	1,522
금액	13,139	1,507	1,171	336	573	71	502	14,073

※결산서는 원 단위 작성이고,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여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정수물품 초과·부족 현황 >

(단위: 개)

품 명	내구년수	정수수량(A)	보유수량(B)	수량차이 (A-B)
합계(12개)		1,215	1,163	52
미 니 버 스	8	18	17	1
버 스	8	3	2	1
승 용 자 동 차	8	23	19	4
스 포 츠 유 티 리 티 차 량	7	10	12	-2
화 물 트 럭	8	86	76	10
쓰 레 기 수 거 용 트 럭	7	27	26	1
탱 크 트 럭	8	9	7	2
냉 방 기	10	238	228	10
냉 난 방 기	9	505	495	10
노 트 북 컴 퓨 터	6	183	172	11
비 디 오 프 로 젝 터	8	98	95	3
구 내 방 송 장 치	10	15	14	1

□ 문 제 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예산군의 주요 물품 12개 항목의 정수는 총 1,215개이나 실제 보유 물품 개수는 1,163개로 정수 수량보다 보유 수량이 52개 적은 것으로 확인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매년 수억원 규모의 물품이 신규로 취득·처분되고 있어 물품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물품의 취득·처분시 대장 정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군의 주요 물품 정수는 조직의 규모, 공무원 수, 시설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정수 물품 초과·부족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조속히 일치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13. 기타특별회계 등 자금운용 철저

□ 현 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지방회계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출관을 두어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 회계 훈령 제36조 제2항에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24년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자금운용 내역									계획 수립
	총 계 (a+b)	공공예금(a)		자금운용소계(b)		정기예금		통합기금예치		
		일일 평잔	비중 (%)	일일 평잔	비중 (%)	일일 평잔	비중	일일 평잔	비중 (%)	
합 계	2,286	354	15.5	1,932	84.5	1,929	84.4	3	0.1	
일 반 회 계	1,958	193	9.9	1,765	90.1	1,765	90.1		0.0	
일 반 회 계	1,958	193	9.9	1,765	90.1	1,765	90.1		0.0	수립
기 타 특 별 회 계	115	80	69.5	35	30.5	31	27.7	3	2.8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0.3	0.3	100	-	0.0	-	0.0	-	0.0	미수립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자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	0.1	0.1	100	-	0.0	-	0.0	-	0.0	미수립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	1	1	100	-	0.0	-	0.0	-	0.0	미수립
주 차 장 사 업 특 별 회 계	59	34	57.4	25	42.6	25	42.6	-	0.0	수립

장기미집행도시상 계획시설대지보 특별회계	0.7	0.7	100.0	-	0.0	-	0.0	-	0.0	미수립
산업단지조성관리 사업특별회계	10	7	69.4	3	30.6	-	0.0	3	30.6	미수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5	15	100.0	-	0.0	-	0.0	-	0.0	미수립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16	9	60.0	6	40.0	6	40.0	-	0.0	수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1	11	100.0	-	0.0	-	0.0	-	0.0	미수립
공기업특별회계	212	81	38.1	131	61.9	131	61.9	-	0.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0	44	40.0	66	60.0	66	60.0	-	0.0	미수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2	36	35.9	65	64.1	65	64.1	-	0.0	미수립

※ 자금운용률 = (정기예금+기업자유예금+통합기금 등 예치액)÷전체자금×100

※ 지방자치단체는 입·출금이 제한되는 저금리의 공금예금계좌를 기본으로 수입·지출이 이루어 지며,
유휴자금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인 정기예금 등에 예치

※ 억원단위로 작성하여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문제점

- 위와 같이 일반회계 자금 운용률은 90.1%에 비해 기타 특별회계의 평균 자금 운용률은 30.5%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또한, 9개 특별회계중 7개가 자금 운용 계획을 미수립하였으며, 6개 특별회계는 자금 운용률이 저조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이 성립되면 세입예산 월별징수 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근거로 한 예산배정 계획 및 자금배정 계획, 전년도 징수 실적, 해당연도의 금고 약정 현황 및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 또한, 자금지출 종합계획 및 장·단기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 등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2023회계연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2건으로
-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배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당해연도 내 예산을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징수대책, 세입 전반에 대한 검토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부동산 등 압류, 번호판영치,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초과 세입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음.
- 하수도공기업의 과도한 당기순손실 대책으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자산재평가 용역을 통하여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
- 성인지 결산 입력 시 목표치 누락발생 및 달성률 제고방안을 위하여 성인지 결산과 별개로 성인지예산서 사업목록 부적절에 대하여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가족지원과 연계) 후 자체교육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였음.
- 합리적인 세입 예산편성을 위하여 미편성된 세입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 추계자료 제출 시 철저하게 자료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와 정리보류를 통해 미수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음.
- 철저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위하여 5년 반환기간이 경과한 현금과 전 회계연도 대비 50%이상 증가한 현금을 보관하는 부서는 신속히 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

-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초과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였음.
- 정수물품 초과·부족 물품 최소화를 위해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정수 물품 현황 파악 및 과부족에 대한 물품 현행화에 적극 노력하였음.
-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비 산정을 통해 지급규모 확정, 지출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자금관리를 위해 자금운용 계획 수립 및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화에 적극 노력하였음.
- 추후 반복되는 권고사항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함.

